#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5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황 희·이기헌·한민수

박 정ㆍ이병진ㆍ어기구

이용선 · 이학영 · 황정아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 특히 2022년 12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채팅하듯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답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으며,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게 됨.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기술적수준의 경이로움 너머로 개인정보의 침해, 알고리즘 왜곡으로 인한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의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바.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 인공지능책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 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 2. "인공지능"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 3.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 4. "고위험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 나. 생체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 다. 교통,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용과 관련된 인공지능
  - 라. 채용 등 인사 평가 또는 직무 배치의 결정에 이용되는 인공지 능
  - 마. 응급서비스, 대출 신용평가 등 필수 공공·민간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 바. 수사 및 기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 사. 문서의 진위 확인, 위험평가 등 이민, 망명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 5.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란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 고위험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 나.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6. "이용자"란 인공지능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 능이 안전하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대국민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 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 ③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사업자책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책임위원회는 알고리즘 구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자책임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에 맞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공지능의 진흥

- 제7조(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①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인공 지능 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7. 인공지능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사업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충당 등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정 성·신뢰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와 보급
  - 2.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개발
  - 3.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사업
  - 4.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 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 등의 추진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 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설립 또는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서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자격 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인공지능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 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

- 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 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 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실시) 정부는 건전한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분야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규제의 원칙)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 법에 따른 원칙

에 부합하도록 개선 · 정비하여야 한다.

#### 제3장 고위험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 제18조(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①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3년마다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2.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관련 정책의 수립
  - 3. 고위험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

한 사항

- 4. 공공부분에서의 고위험인공지능의 도입에 관한 사항
- 5. 윤리원칙 및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책임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고위험인공지능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고위험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험 평가
  - 2.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단계별 문서의 전자화
  - 3. 고위험인공지능의 개발 결과의 추적을 위한 기록
  - 4. 고위험인공지능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 5. 사람에 의한 고위험인공지능의 관리·감독
  - 6.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
  - ②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동작원리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안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 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고지, 제3항에 대한 설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권리) ①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 1.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 2.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 ②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인공지능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

- 권,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이용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해당 자료를 제3 항에 따라 요청한 목적 또는 제4항에 따라 청구한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위험인공지능의 설명요구권·이의제기 권 및 거부권,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요청·청구

및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 책임의 일반원칙) ①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손해가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2.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가 고위험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3.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 4. 해당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5. 해당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이 고위험인공지능 사업자가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서비스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③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이 경우 정부는 보험 가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④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또는 보험상품 개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인공지능 관련 분쟁조정

- 제23조(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①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1. 인공지능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5. 인공지능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 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 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 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 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27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8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9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 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30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2.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3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 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조정절차 등) ①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인공지능책임법」에 따른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고 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